

**지정교육·훈련 과정의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기준(제45조 관련)**

| 위 반 행 위  | 근거법조항           | 행정처분기준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교육·훈련과정의 지정을 받은 경우  | 법 제24조의5 제1항제1호 | 지정취소         |
| 2.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<br>가. 해당 교육·훈련과정에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<br>나. 해당 교육·훈련과정에서 위반행위가 2회 이하인 경우       | 법 제24조의5 제1항제2호 | 지정취소<br>시정명령 |
| 3.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교육·훈련을 실시한 경우<br>가. 해당 교육·훈련과정에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<br>나. 해당 교육·훈련과정에서 위반행위가 2회 이하인 경우 | 법 제24조의5 제1항제3호 | 지정취소<br>시정명령 |
| 4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·훈련생의 교육·훈련과정 이수 처리를 한 경우   | 법 제24조의5 제1항제4호 | 지정취소         |